

ESG위원회 규정 [제정 : 2021. 9. 9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 이사회 내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사항)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(ESG)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,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- 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제4조 제3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3장 회의

- 제6조(소집권자)**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제7조(소집 절차)**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개최일을 정하여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- 제8조(결의 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 및 보고사항)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 경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ESG 경영 중장기 목표 및 연간계획 설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위원회에 보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 추진 성과 및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
2. ESG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
3. ESG 평가관리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 간사는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2조(보고) 위원회는 심의 또는 의결한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ESG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집 통지, 부의 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다만 법령의 개정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용어 변경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. 9. 9. 부터 시행한다.